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

의안 번호	24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0. 6. 11.

발 의 자: 이미자 의원 외 6명

1. 근거 규정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

2. 조사의 목적

주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수탁자 선정,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사업 운영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,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과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고자 함.

3. 조사할 사안의 범위

가. 조사 사안의 범위(2018년 7월~현재까지 민간위탁사업)

-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
- 민간위탁사업 운영 전반

나. 대상기관

- 영등포구(민간위탁사업 담당 부서)
-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

4. 조사 실시 위원회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